

중기청, 「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」 발표

중소기업의 지식서비스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서비스분야 R&D 지원키로

- 컨설팅, 디자인, 연구개발,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 분 야 중소기업의 신수종사업군 발굴 등 「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정책 로드맵」마련
- R&D, 마케팅 등 서비스 전문기업과 제조업과의 협업 지원을 통한 「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」 육성
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의 R&D 를 지원하는 「서비스 연구개발제도」최초로 도입
- 컨설팅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양성 및 컨설팅기법 연구 지원 등 컨설팅서비스 기반강화 및 시장 창출촉진
-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관리 및 정보화 아웃 소싱 서비스 지원 추진

● 추진배경

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, 서비스 무역수지 적 자 등 서비스 부문의 비효율성이 제조업 등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, 이를 해 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.



정부의 주요 서비스 대책 요약

- ▶ 104년 : 세제 · 금융지원 및 인프라개선방안과 레저스포 츠, 전시, 디자인 등 18개 서비스분야 경쟁력강 화 대책을 수립
- ▶ 05년 :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컨설팅, 방송·광고, 교육, 의료 등 26개 서비스 분야를 선정, 분야별 대책을 수립
- ▶ 06.12 :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「서비스산 업 경쟁력 강화 방안」을 수립, 추진
 - 컨설팅 등 21개 유망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선정, 집 중·육성
- ▶ 107.7 : 관광레저분야 육성,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 「2 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』 마련
- ※ GDP 비중: 서비스업('00: 54.4%→'05: 56.3%), 제조업('00: 29.4%→'05: 28.4%), 고용비중: 서비스업('00: 61.6%→'05: 65.5%), 제조업('00: 20.3%→'05: 18.5%)
- ※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(1인당 부가가치, 2001년, 제조 업=100): 우리나라 56.2, OECD 93.4
- ※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규모(역불, 한국은행): '00: 65→' 05: 115.1

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차별제도 시정,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, 그간의 정부대책은 제도·규제 개혁 및 업종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한 부처별, 업종별 대책이었다.

이에따라 기업현장에서의 이행력 제고,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대책이 요청되었다.

중소기업청(청장: 이현재)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, 그간에 마련된 각종 서비스대책이 실질적으로 기업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판단에서 개별 업종별 시책이 아니라 기업별로



정부의 각종 서비스 대책을 뒷받침하고, 서비스 R&D 지원제도 등을 신설하여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분야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단기 중소 서비스업 육성시책을 마련했다.

※ 최근, 미국·일본·EU 등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 사이언스 등의 혁신 활동을 강 화하는 추세

● 추진경위

이를위해,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'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제도', '중소기업간 협업제도' 등 법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, 또한 지난 3월에는 지식서비스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'중소서비스지원팀'을 신설하고, 삼성경제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지식서비스 분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.

이번 대책은 이상의 노력을 종합하고, 핀란드 등 선진국사례를 참조하여 중소 지식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.

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의 주요내용

중기청의 '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전략 및 과제'의 핵심은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 및 중소기업간 협업제도 활성화를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.

주요 내용 (구체적 내용은 매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공 예정) 은 다음과 같다.

①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신수종 사업군 발굴 등을 위한 「중소 지식서비스업 활성화 종합계획」을 수립('07.하)하고,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법적근거 마련('08년)



- ② R&D전문기업, 마케팅 전문기업 등의 협업 구성시 컨설팅 비용을 지원('08년 10억원, 업체당 2천만원)하고, 미국, 이태리 등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(가칭)「중소기업간 협업 촉진법」제정 추진('08년)
- ③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서비스분야 R&D 지원제도 신설('07년 50억원, 60개 업체)
- ④ 컨설팅사 대형화·전문화 유도 위한「컨설팅 파트너쉽 M&A 제도」도입('08년) 등 컨설팅 기반강화 및 시장창출 지원
- ⑤ 「아웃소싱 지원센터」(e-Posting) 운영 등 중소기업 지식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 지원('08년 시범실시, '09년부터 본격 시행)

● 기대효과

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은 9월 6일(목) 브리핑에서, 최근 우리경제의 서비스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은 창의와 혁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, 이번 대책이 "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에 크게 기여함을 물론, 제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제조업과의 동반성장 등 산업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